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급)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궁능유적본부에 제도·기획,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비공개 왕릉 개방에 필요한 인력 등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기존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장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제23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5 총계 “270”을 “27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9”를 “272”로 하며, 일반직 계 “268”을 “27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5”를 “8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4”를 “45”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총계 “280”을 “28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9”를 “282”로 하며, 일반직 계 “278”을 “28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5”를 “8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

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9”를 “50”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6 총계 “99”를 “10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8”을 “99”로 하며,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기록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7 총계 및 일반직 계 “73”을 각각 “7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72”를 “73”으로 한다.

별표 17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215”를 각각 “2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4”를 “21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⑤ (생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시행</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 -----
<u>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u> 및 <u>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0</u>	<u>273</u>	+3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9</u>	<u>272</u>	+3
·	·	·	
·	·	·	
일반직 계	<u>268</u>	<u>271</u>	+3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85</u>	<u>86</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44</u>	<u>45</u>	+1
·	·	·	

• 전 문 경 력 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 1	•	
<u>전 문 경 력 관</u> <u>다군(사범단속 담당)</u> • •	<u><신 설></u> • •	<u>1</u> • •	+1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0</u>	<u>283</u>	+3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79</u>	<u>282</u>	+3
·	·	·	
·	·	·	
일반직 계	<u>278</u>	<u>281</u>	+3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85</u>	<u>86</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u>49</u>	<u>50</u>	+1
·	·	·	
·	·	·	

전 문 경 력 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u>전 문 경 력 관</u> <u>다군(사범단속 담당)</u>	<u><신 설></u>	<u>1</u>	+1
•	•	•	
•	•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9</u>	<u>100</u>	+1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98</u>	<u>99</u>	+1
·	·	·	
·	·	·	
일반직 계	<u>52</u>	<u>53</u>	+1
·	·	·	
·	·	·	
학예연구사	1		
<u>기록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u>	<u>74</u>	+1
일반직 계	<u>73</u>	<u>7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2</u>	<u>73</u>	+1

[별표 17의2]

궁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5</u>	<u>218</u>	+3
일반직 계	<u>215</u>	<u>218</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4</u>	<u>217</u>	+3